

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통지서

양육비 채무자	성명		전화번호	
	생년월일			
	주소			
양육비 선지급 대상자	성명		지원자녀 성명	
회수 사유	① 선지급 금액	원		
	선지급 기간	년 월 ~ 년 월		
② 이미 납부한 금액	(※ 기준일자: 년 월 일) 원			
③ 회수금액(①-②)	원			
납부기한	년 월 일까지			
납부기관	양육비이행관리원			
납부방법	계좌이체 (예금주/은행/계좌번호:)			

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의10,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11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금액에 대한 회수를 통지하오니,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위 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
가
다

양육비 이행관리원장 직인

안내 사항

1. 납부 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.
2. 위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「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3. 회수금액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양육비 선지급 회수금액 분할납부 신청서(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참고)를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